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안연월일: 2024. 9. .

제 안 자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 법」개정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 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나이 관련 규정에서 "만" 표시 삭제

3. 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만 19세"를 "19세"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호 중 "만 6세"를 "6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청소년"이란 서울특별시 영	1
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	
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	
내 학교에 재학 중인 <u>만 19세</u>	<u>1</u> 9세
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	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의장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
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	
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	
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	
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만 6세</u> 미만 미취학 자녀를	6. <u>6세</u>
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.	
7. ~ 10. (생 략)	7. ~ 10. (현행과 같음)